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1. 모집 학과 및 정원 (단위: 명)

학 과		학급수	모 집 정원	일반 전형	특별전형		
					마이스터 인재 전형	봉사활동 우수자전형	사회통합 전형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1	전기에너지과	4	72	46	41	6	18
2	에너지전자제어과	2	36	23			
3	에너지기계과	2	36	23			
4	에너지정보통신과	2	36	23			
계		10	180	115	65		

- ※ 모집정원은 학교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특별전형에서 모집정원 미달시 일반전형으로 충원함.
- ※ 본교는 예비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음.

2. 모집 지역

□ 전국단위 모집(서울특별시 외 지역은 모집정원의 42%이하 선발) (단위: 명)

전형 구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외		합 계	
일반 전형		75	40		115	
특별전형	마이스터 인재 전형	16	기숙사 입소	10	41	65
			기숙사 미입소	15		
	봉사활동 우수자 전형	3	3		6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 (60% 우선선발) 사회다양성전형	11	7		18
합 계		105	75		180	

- ※ 지역 구분은 지원자의 졸업(예정) 중학교 교육청 소재지를 따름.
- ※ 검정고시 합격자의 지역 구분은 검정고시 관할 교육청 소재지를 따름.
- ※ 지역별 지원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으면 다른 지역(서울 ↔ 서울 외)에서 추가 선발함.
- ※ '서울특별시 외 마이스터 인재 전형의 기숙사 미입소 전형'이 미달인 경우
 - 1) 마이스터 인재 전형의 서울특별시에서 선발함.
 - 2) 서울특별시 일반전형에서 선발함.

3. 지원 자격

가. 일반전형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중학교 졸업자 또는 중학교 졸업과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 우리학교 진로지도 정책에 동의하는 자.

나. 특별전형

일반전형 지원 자격을 갖추고 다음 추천 기준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전형구분		대상자	지원 자격
마이스터 인재전형		✓ 에너지 분야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으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봉사활동 우수자 전형		✓ 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2025.09.30. 마감 기준) 봉사활동 누적 시간이 50시간 이상으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근거하여 주민센터에 등록된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자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 (유의) 근거 조항 제60조의5로 입법 개정 예정 [시행 2025. 9. 19.]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 대상자'일 경우 보훈자 자녀 '정원 외'로 지원
	사회다양성전형 (가정·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재학생'에 한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기준 중위소득 50~60%이하 수준으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포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회의록 제출, 추천위원회의 의견서 작성 및 첨부 (단, 추천위원회 의견서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한함) ※ 학교추천위원회 심의 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단계에서는 학생·학부모 개인 식별정보는 비공개 처리 후 보안에 철저히 유의하여 심의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거주자로서 해당 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
		소년·소녀가장/조손가족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이외 소년·소녀가장 또는 조손가족의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순직군경, 순직소방관,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의 자녀(자녀 모두 지원 가능)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군인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
		경찰(해양경찰)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감 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
		소방공무원의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시·도 또는 군·구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의 자녀
		기타	선발교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신청한 유형 중 교육감이 사회통합전형 제도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여 승인한 자

※ 보훈자 자녀 정원 외 선발: 국가보훈부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정원의 3%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

※ 사회통합전형은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실시(5. 전형방법 참조)

※ 사회다양성전형은 2025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자격 부여

분류	내용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불필요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의 부모(※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평균 금액 합산액이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지역건강보험료 전환자 중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유의사항2 확인)
직장가입자 혼합(지역+직장)가입자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의 부모(※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평균 금액 합산액 및 2025년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합산액 두 조건 모두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혼합가입자 (직장+지역)	
2인	162,782	225,915	229,454	880,320
3인	243,019	288,617	295,134	1,299,840
4인	320,449	354,964	369,517	1,711,680
5인	382,076	407,092	431,294	2,099,760
6인	447,279	461,699	506,004	2,466,960
7인	545,970	552,230	599,810	2,821,680
8인	591,277	599,810	673,463	3,176,400
9인	654,281	673,463	792,926	3,531,120
10인	654,281	673,463	792,926	3,885,600

※ 유의 사항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관련

- (개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란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의미
* 단, 직장 및 혼합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에 '소득월액(건강)'을 포함한 '고지금액'을 의미
- (제외사항) 장기요양보험료 및 연말정산금액(분할)납부청구액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에서 제외함
▶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을 분할납부한 경우 "개인별 고지 산출내역(가입자별 부과내역)"을 제출해야 함
(발급방법) '개인별 고지 산출내역(가입자별 부과내역)' : 재직 중인 사업장 업무담당자에게 신청, 공단 전산에 등록된 해당 사업장 팩스번호로만 전송 가능
- 부 또는 모가 피부양자로서 자격확인서의 자격취득일이 최근 1년 이내 변동이 있을 경우(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부 또는 모가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고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 피부양자의 최근 1년간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유의 사항 2.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관련

- (발급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및 구청(세무민원부서) 직접 방문 발급 ※ 온라인 발급 불가
- (개념) 재산세(주택분) 과세금액이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주택 과세 합산금액'을 의미
- (사례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1부 제출): 전국 자치단체 재산세(주택)기준 과세 사실 없음 문구가 기재된 전국단위 무관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사례2)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여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각 1부씩 총 3부 제출): 재산세(주택) 부과된 내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부과되지 않은 내역(서울 내 부과되지 않은 모든 자치구 포함)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서울 제외 전국 16개시도 기준 해당 세목에 대해 과세사실없음이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다. 특별학생 전형

1) 고입 특례대상자

가) 지원자격: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4호

구 분		자 격 요 건	비고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정원 내
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모집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선발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다목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함)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4호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등	정원 내

나) 선발방법

- (1) 제1호 및 제4호 해당자는 정원 내 선발
- (2)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는 모집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선발

2) 보훈자 자녀

가) 지원자격: 일반전형의 지원 자격을 갖추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는 기회균등전형으로 선발)

나) 전형방법: 보훈자(국가유공자) 자녀는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모집정원 외로 선발

※ 고입 특례, 보훈자 자녀의 경우 본교 신입생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4. 제출 서류

가. 전형별 제출 서류(제출서류는 추후에 변경될 수 있음)

서류목록	일반 전형	특별전형			특별학생 전형	
		마이스터 인재 전형	봉사활동 우수자 전형	사회통합 전형	고입 특례 대상자	보훈자 자녀
입학원서	◎	◎	◎	◎	◎	◎
성적일람표 및 확인서	◎	◎	◎	◎		◎
중학교 생활기록부 (졸업예정자는 출결, 봉사활동 2025.09.30. 기준)	◎	◎	◎	◎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	◎	◎	◎
특별전형 학교장 추천서		◎	◎			
학업계획영상(원서접수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		◎	◎	◎		
기숙사 미입소 확인서 (마이스터 인재 전형 '서울 외 지역' 기숙사 미입소 지원자에 한함) (원서접수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보호자(법정대리인) 확인서				◎		
2026학년도 고입 전형 학교장 확인서 서식				◎		
사회통합전형 해당 유형 증빙서류				◎		
특례대상 확인서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부 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사본,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봉사활동 확인서(봉사활동우수자 전형에 한함)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					

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별 확인 증빙 서류(모든 증빙서류는 원서접수시작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만 인정)

지원유형		구 분	제 출 서 류	발급처	비고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① (지원자 본인이 포함된)주민등록등본 ② (발급기준)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단, 다음 지원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필요 -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발급기준)'부' 또는 '모' 기준 - 한부모가족: (발급기준)'자녀(지원자)' 기준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 정부24(홈페이지)
			③ 부정입학 방지 보호자(법정대리인) 확인서 서식 ④ 2026학년도 고입 전형 학교장 확인서 서식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지원자 및 학교 작성	
기 회 균 등 전 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에서도 발급 가능	구청, 주민센터, 학교, 정부24 (홈페이지)	○ 정부24(홈페이지) ① 수급자 증명서 ②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홈페이지)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 공단(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 정부24(홈페이지) ○ 복지로(홈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할 보훈지청, 정부24 (홈페이지)	○ 정부24
	기준중위 소득50% 이하· 기준중위 소득60% 이하	기준중위소득50% 이하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구청, 주민센터, 학교	○ 정부24
		기준중위소득60% 이하	○ 교육비지원 확인서(확인서 발급사유: 기준중위소 득 60% 이하임을 확인, 해당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 지 확인 후 제출)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의 자녀로 교육비 지 원 대상자임을 반드시 확인 후 추천(NEIS에서 확인 가능)	학교	○ 학교: 학교 행정실에 교 육비 담당부서 문의 후 수기 발급 요청 ※학교장 직인 날인 포함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학교장 추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 단지사, 공단(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 으로 판단 ○ 아동복지시설 자원증명서		해당 증빙서류별 확인 가능한 기관	
		○ 학교장 추천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회의록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학교추천위원회 의견서 포함		학교	

지원유형		구 분	제 출 서 류	발급처	비고
사 회 다 양 성 전 형	공통 (적용: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고지액)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고지액)	구청(세무민원부서), 주민센터(방문발급만 가능)	
			○ 주택 미소유 시: 전국단위, 재산세(주택) 기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자치단체에 과세 사실 없음' 문구가 기재된 증명서 1부 제출 ○ 주택을 소유하여 재산세가 과세 된 경우: 각 1부씩 총 3부 제출 확인 후 서류 제출 ○ 발급처(공통):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세무민원부서) ※ 직접 방문 발급만 가능, 온라인 발급 불가		
	1순위	다문화가족 자녀	○ 부 또는 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사본	해당서류 발급기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 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통지서 사본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소년·소녀 가장/조손가족의 자녀	○ 사실 관계 확인서(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 순직군경, 순직소방공무원, 순직교원, 순직공무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다자녀 가족(3자녀 이상) 자녀	○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공통'제출서류만 제출		
	2순위	한부모가족 자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당서류 발급기관	
		환경미화원의 자녀(시·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재직증명서		
		군인 자녀(중령이하)	○ 15년 이상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경찰(해양경찰) 자녀(경감이하)			
		소방공무원 자녀(소방경이하)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지원자는 증빙서류 원본을 각 2부씩 준비하여,
①소속교(중학교 또는 관할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및
②지원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서류 인정 유효기간(원서접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을 확인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주의]

※ 지원 자격 확인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원서접수 후 서류 심사과정에서 사회통합전형 지원자의 서류 미비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학부모 및 지원자 동의 시) 해당 지원자는 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될 수 있음

다. 사회통합전형 국가보훈대상자 범위 및 제출서류

보훈대상자	근거	증명서류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호 및 제2호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제18호, 제73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대상자 사망'시 교육지원 대상자이므로 정원의 '보훈자자 녀전형'으로 지원하여야 함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제3호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유족)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제4호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원

5. 전형 방법

가. 일반전형

1) 평가 항목

항 목	교과성적		인 성		마이스터 적성·소양검사	심층면접	합계
	일반 교과 (80점)	체육· 예술 (10점)	출결성적	봉사활동성적			
배 점	90		30	30	90	60	300
비 율	30%		10%	10%	30%	20%	100%

2) 평가 기준

가) 교과성적: 성적산출 프로그램 본교에서 제공(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에 탑재)

- 교과성적이란 「중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산출한 졸업(예정)자의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취도를 환산한 점수를 본교 교과성적 산출 공식에 따라 산출한 성적을 말한다.
- 교과성적 산출시 소수 자리수는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 일반교과성적(80점)

항 목	2학년		3학년	합계
	1학기	2학기	1학기	
배 점	24	24	32	80
비 율	30%	30%	40%	100%

항 목	성취도별 환산 점수				
성취도	A	B	C	D	E
환산 점수	5	4	3	2	1

일반교과성적 산출 공식

○ 일반교과성적(80점 만점)

$$= \frac{24}{5} \text{ 점} \times \left(\frac{A_{21}}{N_{21}} + \frac{A_{22}}{N_{22}} \right) + \frac{32}{5} \text{ 점} \times \left(\frac{A_{31}}{N_{31}} \right)$$

A_{21} : 2학년 1학기 개인별 일반교과 성취도별 환산 점수의 총합

A_{22} : 2학년 2학기 개인별 일반교과 성취도별 환산 점수의 총합

A_{31} : 3학년 1학기 개인별 일반교과 성취도별 환산 점수의 총합

N_{21} : 2학년 1학기 일반교과목 수

N_{22} : 2학년 2학기 일반교과목 수

N_{31} : 3학년 1학기 일반교과목 수

(2) 체육·예술교과성적(10점)

항 목	2학년		3학년	합계
	1학기	2학기	1학기	
배 점	3	3	4	10
비 율	30%	30%	40%	100%

항 목	성취도별 환산 점수		
성취도	A	B	C
환산 점수	3	2	1

체육·예술교과성적 산출 공식

○ 체육·예술교과성적(10점 만점) = $\left(\frac{R_{21}}{M_{21}} + \frac{R_{22}}{M_{22}} \right) + \frac{4}{3} \text{ 점} \times \left(\frac{R_{31}}{M_{31}} \right)$

R_{21} : 2학년 1학기 개인별 체육·예술교과 성취도별 환산 점수의 총합

R_{22} : 2학년 2학기 개인별 체육·예술교과 성취도별 환산 점수의 총합

R_{31} : 3학년 1학기 개인별 체육·예술교과 성취도별 환산 점수의 총합

M_{21} : 2학년 1학기 체육·예술 교과목 수

M_{22} : 2학년 2학기 체육·예술 교과목 수

M_{31} : 3학년 1학기 체육·예술 교과목 수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예정)자는 이수한 최종학년(최종학기)성적을 100% 반영함.

나) 출결성적(산출기준일 : 2025.09.30.(화))

3년간 미인정 결석일수	0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이상
점수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특이 사항	3개 학년의 미인정결석 일수와 환산 결석 일수를 합산 - 미인정결과,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의 합계가 3회인 경우 환산 결석 일수 1일로 산정(예: 4회- 1일, 5회- 1일, 6회- 2일) ※ 중학교 3년간 결석 일수 11일 이상인 경우 최저점 19점을 부여											

다) 봉사활동성적

봉사활동 평가	
3년간 봉사활동 시간	○ 시수와 상관없이 만점 ※ 현재 3학년, 재수생, 삼수생 관계 없이 모두 만점 처리함.

라) 마이스터 적성·소양검사

○ 에너지 분야 영마이스터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종합적성검사 및 인성검사로 평가 ○ 평가 영역 : 언어이해력, 응용계산력, 공간지각력, 문제해결력, 인성 총 5개 영역

항 목	배 점				
	A	B	C	D	E
언어이해력	20	18	16	12	10
응용계산력	20	18	16	12	10
공간지각력	10	9	8	6	5
문제해결력	20	18	16	12	10
인성	20	19	18	10	4

마) 심층면접

○ 에너지 분야 영마이스터로서의 자질과 진로 적합성을 심층면접을 활용하여 평가 반영 ○ 평가 영역 : 직업기초능력, 문제해결능력, 예의/예절

항 목		배 점				
대영역	세부영역	A	B	C	D	E
지원분야 이해 직업자세	직업기초능력	25	23	21	10	5
	문제해결능력	25	23	21	10	5
인성 및 태도	예의/예절	10	9	8	5	2

나. 특별전형

1) 평가 항목

항 목	교과성적		인 성		마이스터 적성·소양검사	학업 계획 영상	심층 면접	합계
	일반 교과 (80점)	체육 예술 (10점)	출결성적	봉사활동성적				
배 점	90		30	30	90	20	40	300
비 율	30%		10%	10%	30%	6.7%	13.3%	100%

2) 평가 기준

가) 교과성적: 일반전형과 동일함.

나) 출결성적: 일반전형과 동일함.

다) 봉사활동성적: 일반전형과 동일함.

라) 마이스터 적성·소양검사: 일반전형과 동일함.

마) 학업계획영상

- 에너지 분야 영마이스터로서 미래비전에 대한 도전정신 · 올바른 가치관 · 긍정적인 사고 · 봉사정신
- 본교 입학 후 에너지 마이스터로서 성장을 위한 창의성 · 학업 계획성을 반영

항 목	배 점				
	A	B	C	D	E
학업계획영상	20	19	18	10	5

바) 심층면접

- 에너지 분야 영마이스터로서의 자질과 진로 적합성을 심층면접을 활용하여 평가 반영
- 평가 영역 : 직업기초능력, 문제 해결 능력, 예의/예절

항 목		배 점				
대영역	세부영역	A	B	C	D	E
지원분야 이해 직업자세	직업기초능력	15	14	13	7	3
	문제 해결 능력	15	14	13	7	3
인성 및 태도	예의/예절	10	9	8	5	2

사) 사회통합전형 전형 방법(대상자 순위는 2페이지 참조)

- 1단계 선발: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 전형 정원의 60% 우선 선발
- 기회균등전형의 지원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을 경우 사회다양성전형에서 추가 선발함.
- 2단계 선발: 기회균등전형지원자 중 1단계 우선 선발되지 않은 대상자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대상자 중 선발
- 3단계 선발: 2단계 미충원 시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선발

▶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됨.

▶ 사회다양성 전형 중 다자녀가족 자녀는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선발

※ 특별전형 불합격자로 일반전형 재응시 때에는 특별전형 심층면접 점수를 일반전형에 환산 적용함

다. 특별학생 전형

1) 고입 특례대상자 전형

가) 전형방법은 일반전형에 따름.

나) 국내 학교에서의 성적을 반영하되 모든 학기(2학년 1, 2학기 및 3학년 1학기)의 성적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성적이 없는 학기의 직후 또는 직전 성적을 적용 반영함.

다) 국내 학교의 성적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외국 학교에서 취득한 성적을 반영함.(반영 교과 및 반영 방법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라) 국내·외 학교에서의 성적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마이스터 적성 및 소양검사와 심층면접 점수를 교과성적, 출결성적, 봉사활동 성적으로 환산하여 종합 성적을 산출할 수 있음.

2) 보훈자 자녀 전형

전형방법은 일반전형에 따름.

라. 검정고시 합격자

1) 성취 등급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를 기준으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의 교과 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지침에 따라 평정함.

항 목	성취도별 환산 점수				
원점수	90이상~100이하	80이상~90미만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	60미만
성취도	A	B	C	D	E
환산 점수	5	4	3	2	1

2)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의 시험과목 전체 성적을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교과성적에 반영함.

검정고시 합격자 성적 환산 공식

- 교과성적(90점 만점) = $\frac{\text{성취도별 환산 점수의 총합}}{\text{교과목수}} \times 18$
- 출결성적(30점 만점) = 19점(기본점수) + $\frac{\text{교과성적 성취도별 환산점수}}{30} \times 11$
(소수 자리수는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봉사성적(30점 만점) = 시수와 상관없이 모두 만점

6. 사정 방법

가. 일반전형

1) 일반전형 학과별 지원과 관계없이 모집정원만큼 전형점수 합계가 높은 성적순으로 선발(1차 선발)

※ 동점자는 교과성적, 출결성적, 봉사활동성적, 마이스터 역량검사, 심층면접 우선 순으로 함.

2) 1차로 선발된 학생을 제1지망의 과별 석차에 따라 학과별로 모집정원만큼 선발(2차 선발)

- 3) 1차 선발에 합격하고 2차 선발에서 불합격된 자는 제2지망에 따라 모집정원 미달학과로 넘겨 사정·선발(3차 선발)
- 4) 3차 선발에서도 정원 미달의 학과가 있는 경우, 3차 선발에서 불합격된 자를 제3지망, 제4지망의 순으로 사정·선발(4차 선발)
- 5) 4차 선발에서도 정원 미달의 학과가 생기는 경우(예: 포기자 등)에는 1차 선발 탈락자 중 미달된 인원만큼 위 2)~4)의 방법으로 사정·선발(최종 선발)

나. 특별전형

- 1) 특별전형 전형구분별 각 모집정원만큼 전형점수 합계가 높은 성적순으로 선발 (1차 선발)
※ 동점자는 교과성적, 출결성적, 봉사활동성적, 마이스터 역량검사, 심층면접 우선 순으로 함.
- 2) 1차로 선발된 학생을 전형구분과 관계없이 제1지망의 과별 석차에 따라 과별로 모집정원만큼 선발(2차 선발)
- 3) 1차 선발에 합격하고 2차 선발에서 불합격된 자는 제2지망에 따라 모집정원 미달학과로 넘겨 사정·선발(3차 선발)
- 4) 3차 선발에서도 정원미달의 학과가 있는 경우, 3차 선발에서 불합격된 자는 제3지망, 제4지망의 순으로 사정·선발(4차 선발)
- 5) 4차 선발에서도 정원미달의 학과가 생기는 경우(예: 포기자 등)에는 동일 전형의 1차 선발 탈락자 중 미달된 인원만큼 위 2)~4)의 방법으로 사정·선발(최종 선발)
- 6) 최종 선발에서도 정원미달의 학과가 생기는 경우 **일반전형으로 미충원 인원을** 배정

7. 원서접수 및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일반 전형	특별 전형	
온라인 원서접수	2025.10.20.(월) 09:00 ~ 10.23.(목) 17:00 ※ 10.13(월)부터 입력은 가능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
전형 서류 접수·제출	2025.10.14.(화) 09:00 ~ 10.23.(목) 17:00		본교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단,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10.23.(목) 소인분까지 유효
입학 전형	2025.10.30.(목)		전형 지정장소 및 시간 등 일정은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별도 공지함
합격자 발표	2025.11.05.(수) 10:00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
합격자 신고 기간	2025.11.05.(수) 10:00 ~ 11.10.(월) 17:00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

※ 본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입학전형담당자

※ 전형 일정 및 합격자 발표 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8. 전형료: 10,000원(금일만원)

※ 일반전형, 특별전형 동일

9. 지원자 유의 사항(필독)

가. 이중지원 금지: 전국 소재 전기고 중 1곳만 지원 가능

- 과학고, 예술계고, 체육계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전기고에 지원하려는 자는 전형 날짜가 다르다 하더라도 전국 소재 전기고 중 1교에만 지원이 가능함.
- 단,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지원하여 탈락한 자는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음.
-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는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응시할 수 있음.

나. 본교 합격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2026학년도 전·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다. 전기고등학교에 합격(합격 후 등록하지 않은 자 포함)한 자가 학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 당해 학년도에 다른 학교에 지원이 불가함.

라. 신입생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본교의 학업이나 실습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자는 입학대상자에서 배제할 수 있음.

마. 기재 착오 또는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책임지며, 제출서류 또는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인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바. 동점자는 교과성적, 출결성적, 봉사활동성적, 마이스터 역량검사, 심층면접 우선순위로 함.

사. 전형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특별한 경우는 본교 신입생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아. 심층면접 평가는 전형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처리하며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자. 심층면접에 미응시한 학생은 불합격 처리함.

차. 본교는 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졸업 후 모든 학생들의 산업체 취업을 목표로 함.

카. 본교는 서울 외 지역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며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본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1) 경기도의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소재 중학교 출신 합격자는 기숙사 입사 대상에서 제외됨.
- 2) 단, 기숙사 수용 여유가 있는 경우 경기도의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및 서울 특별시 소재 중학교 출신 합격자 중 원거리 통학자는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입사할 수 있음.

타.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2025년 10월 23일(목) 소인분까지 인정.

10. 문의처

가. 연락처 : 02-524-9800(전화), 02-524-9803(FAX)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권전기공업고등학교

다.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 : <https://sudo.myapply.kr>